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함.

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의 범위 조정(안 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의 하한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안 제76조의2제1항)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4.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를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

재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아목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2조제4항제3호 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5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

제64조제6항 중 “각 호에”를 “각 호에도”로, “100분의 1을”을 “1000분의 5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을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76조의5부터 제76조의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중 “위원 등”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해당 사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및 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조정청구된 사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소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⑧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11조의7(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3조제4항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한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

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용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생략)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u>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 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u>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 우에는 물량내역서를 <u>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 ----- <u>보안상 비밀유지 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 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 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u> -----, ----- ----- <u>전자조달시 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u>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 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u>	<u><삭 제></u>
④ · ⑤ 삭제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 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 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 약)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 11. (생략)

② (생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카. (생략)

<신 설>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

3. (생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가. ~ 라. (생략)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

각 목의 경우 가. ~ 사. (생 략)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8조의2제1 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 는 경우 ② ~ ⑤ (생 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 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 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 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 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한다. 1. 2. (생 략)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0조제3항-----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u>20억</u> 원 이상인 용역	----- ----- <u>50억</u> 원 -----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 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 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 서 추정가격이 <u>15억원</u> 이상인 용역	4. ----- ----- ----- ----- <u>30억원</u> ----- -----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으로서 추정가격이 <u>25억원</u> 이 상인 용역	5. ----- ----- ----- <u>40억원</u>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 ① ~ ⑤ (생략)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제1항 <u>각 호에</u>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 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 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 계액의 <u>100분의 1</u> 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 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	⑥----- <u>각 호에도</u> ----- ----- ----- ----- ----- <u>1000분의 5</u> 를 ----- ----- ----- -----

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⑦·⑧ (생략)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

-----.

⑦·⑧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에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

----- 제5
호----- 영 제76
조제2항제1호나목 -----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다. 정부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6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
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
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
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삭 제>

<삭 제>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 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6조의8(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① 제76조의5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6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6조의 5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6조의9(심의의 요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삭 제>

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6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10(심의) ①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

<삭 제>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6조의11(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6조의1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

<삭 제>

<삭 제>

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안에 대해 미리 심의하여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된 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

당에 관하여는 제76조의10,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6조의13(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삭 제>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설치·운영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
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
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
성한다.

③ (생 략)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의 위원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
영 및 위원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76조의6부터 제76조의8까지
및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제
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 풍부한 사람 -

-----.

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의 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
사·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신 설>

<신 설>

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이 정한다.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및 용역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소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⑧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신 설> 제113조(조정) ① ~ ③ (생략)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u>법 제31조제2항</u>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u> <u>제111조의7(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제113조(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법 제31조제3항</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